

양해각서

(주)현대백화점(이하 “현대” 라 한다.)과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.)은 한국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양 사(기관)가 한국의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, 국제패션수주회인 ‘Fashion KODE’ (이하 “KODE” 라 한다.) 행사의 후원을 통한 상호 발전적인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기본내용)

- (1)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은 한국의 패션산업 발전에 협력한다.
- (2) “현대” 는 “진흥원” 이 주관하는 “KODE” 에 후원 한다.
- (3)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은 “KODE” 에 S/S, F/W시즌별 우수 브랜드에 대한 어워드를 개최한다.
- (4)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은 “KODE” 에 참가한 디자이너브랜드 중 선별하여 백화점 Pop-up 매장에 입점을 추진한다.
- (5) “현대” 는 “KODE” 행사에 부스를 운영하고, “진흥원” 은 부스를 지원한다.
- (6)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은 각 사(기관)의 패션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.

제3조 (패션산업 발전)

- (1)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은 디자이너 패션브랜드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모델을 상호 협의하여 개발하고, 상호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한다.
- (2) 제3조 (1)항의 추진을 위하여 협의 조직을 비상설로 구축한다.
- (3) 제3조 (2)항의 조직은 추후 합의에 의하여 운영토록 한다.

제4조 (후원)

- (1) “현대” 는 제2조 (2)항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지원한다.
- (2) 제4조 (1)항의 후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추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.
- (3) “진흥원” 은 “현대” 에게 “KODE” 의 홍보를 위하여 초대권을 지급한다.

제5조 (디자이너 어워드)

- (1) “현대” 와 “진흥원” 은 KODE 행사기간 중에 디자이너 어워드를 개최한다.
- (2) 제5조 (1)항의 어워드는 KODE에 참가한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“현대” 와

www.kode.or.kr

“진흥원”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며, 상패, 상금과 함께 현대백화점의 Pop-up매장 입점의 기회가 주어진다.

(3) 제5조 (2)항의 상금으로 제4조 (2)항의 후원금을 갈음한다.

(4) 어워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 (2)항의 조직에서 정하고, 시행한다.

제6조 (동반성장 사업)

(1) “현대”는 각 지점을 활용하여 “KODE”에 참가한 디자이너브랜드의 유통다 각화를 위하여 Pop-up매장을 운영한다.

(2) “진흥원”은 “현대”의 “KODE” 관련 행사에 직·간접적으로 협조한다.

(3) 제4조 (1)항의 Pop-up매장의 참여브랜드 선발 및 운영방법은 “현대”의 사규에 의하며, 행사 후 결과는 “진흥원”에게 통보한다.

(4) “현대”와 “진흥원”은 상설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매장의 개소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, 제3조 (2)항의 조직에서 추진한다.

제7조 (부스 참여)

(1) “현대”는 “KODE” 행사 시 직·간접적으로 부스 및 행사에 참여한다.

(2) 제7조 (1)항의 참여는 제3조 (2)항의 조직에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8조 (홍보)

(1) “진흥원”은 “KODE” 행사의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 매체에 “현대”를 메인 후원사로 홍보를 추진하고, 홍보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.

(2) “현대”와 “진흥원”은 동반성장 공동사업에 대한 홍보를 각각 진행하며 홍보 결과를 상호 통보한다.

(3) “현대”는 제2조 (4항)과 관련한 Pop-up 행사시 “KODE” 명 및 CI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 (양해각서의 이행) “현대”와 “진흥원”은 협력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양해각서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제10조 (효력 및 협약기간) 이 양해각서는 “현대”의 대표와 “진흥원”의 대표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.

제11조 (협약의 변경) 협약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 (기타사항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7월 22일

(주)현대백화점
대표이사 김 영 태

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송 성 각

